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32
----------	-------

발의연월일 : 2025. 7. 2.

발 의 자 : 김석기 · 김기현 · 김기웅
김형동 · 이인선 · 성일중
윤상현 · 김태호 · 김용태
인요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 소하천 구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소하천 등의 정비에 관하여 종합계획·중기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가뭄·홍수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에 따라 2020년부터 소하천 정비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이 상이하여 소하천 정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등의 정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

조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중기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비용”을 “국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을 “국가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은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관리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등 정비의 필요성·긴급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고, 제4항에 따른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등 정비 등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시·도의 보조) 시·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 ----- ----- -----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중기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비용 보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3조(국가의 보조) ① 국가는----- ----- ----- --. 다만, 가뭄·홍수 등 재해

<신 설>

예방을 위한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은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등 정비의 필요성·긴급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고, 제4항에 따른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등 정비 등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u><신 설></u>	<u>령으로 정한다.</u> <u>제13조의2(시·도의 보조) 시·도</u> <u>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u> <u>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u> <u>조할 수 있다.</u>
---------------------------	---